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11
----------	-----

2019년 4월 24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19년 4월 3일

3. 상정일자

○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19년 4월 24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1. 제안이유

○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구축 등 연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교육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지원청에서도 예술교육관련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6호).

나.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술교육센터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611호로 제출되어 2019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문화예술 교육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예술교육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사업에 대한 검토(안 제11조제1항제6호)

- 현행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18조에서 “지역사 회와의 지원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¹⁾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학교 밖 자원의 유기적 연계 및 활용을 통해 학교교과 수업 내용 및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교-지역 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계모형을 개발·보급하는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학교예술교육 중장기 계획²⁾」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도 「2019 학교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서울학생 오케스트라 향연, 국악 배달통 사업 지원, 예술이음연구학교 운영, 예술드림거점학교 운영, 학생예술 동아리 운영 등 지역연계 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안 제11조제1항제6호는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사업에 대해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예술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검토(안 제11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문화예술 창의체험 공간 제공, 학교교육 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지역사회 문화예술 연계를 통한 예술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조성을 위해 예술교육센터를 2014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표1]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술교육센터 운영 현황

구분	센터명	운영주체	2018 예산 2019 예산 (단위: 천원)	위치	규모
1센터 (2014. 7)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체육건강 문화예술과	1,648,393	(은평구) 은평문화예술 정보학교 내	연면적: 3,349m ² (지상1~5층)

2) 교육부 보도자료 : 학교예술교육 중장기 계획(2018.11.9.)

			1,630,068		
2센터 (2018. 4)	서울창의예 술교육센터	체육건강 문화예술과	1,214,141	(성동구) 서울동명 초등학교 내	연면적: 2,670m ² (지하1층~지상4층)
			1,086,537		
3센터 (2018. 10)	구로청소년 문화예술센 터	남부교육 지원청	490,996	(구로구) 구로중 학교 내	연면적: 1,967m ² (지상1~4층)
			641,197		

○ 안 제11조의2는 예술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예술교육센터의 설치·운영, 센터의 사업 범위, 예술교육센터장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조 제4항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예술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거나, 사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교육감이 예술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³⁾

○ 이와 같은 자치사무의 위임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⁴⁾, 위임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함께 안 제11조의2제4항의 후단에서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구로청소년문화예술센터(2018.10.개관) : 센터 운영주체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음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이는 기 설치된 예술교육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무가 이미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2] 예술교육센터 프로그램 위탁 운영 현황

구분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1센터)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2센터)	구로청소년문화예술센터 (3센터)
운영 방식	절충형 (총괄: 교육청, 프로그램운영: 전문위탁기관)		
위탁 기관	3사 공동수급	3사 공동수급	구로문화재단
프로 그램	샌드아트, 연극(연기), 사진으로 보는 세상, 단편영화 만들기, SNS기자단, 무대분장, 뮤지컬, 나만의 런웨이, 신나는 비보이 댄스, 뮤직 메이킹, K뮤지컬, 세계의 타악, 디지털드로잉 캐릭터디자인 등	살풀이 랩, 별별 벨소리, 업사이클링 악기, 하이브리드트랜스포머, 인공식물, 공동체 놀이, 커뮤니티 댄스, 연극놀이, 드로잉, 나르는 전단지 등	청소년관현악교실, 청소년댄스교실, 청소년뮤지컬창작교실, 청소년영상미디어교실, 세계시민 캠페인 댄스공연교실 등

○ 다만 안 제11조의2제5항에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센터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역사회 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예술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해 예술교육관련 센터(이하 “예술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예술교육센터는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한다.

③ 교육감은 예술교육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예술교육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예술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예술교육센터의 운영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육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센터장을 지정한다.

④ 교육감은 예술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거나, 사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진흥 사업)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6. (생략)</p> <p>②·③ (생략)</p> <p><u><신설></u></p>	<p>제11조(진흥 사업) ①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지역사회 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u>제11조의2(예술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해 예술교육관련 센터(이하 "예술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u>② 예술교육센터는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한다.</u></p> <p><u>③ 교육감은 예술교육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예술교육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예술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예술교육센터의 운영을 교</u></p>

육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
육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센터
장을 지정한다.

④ 교육감은 예술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
거나, 사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
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
감이 따로 정한다.